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70호**  
**2018. 9. 14.(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고 시(3)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고시 제2018-130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32호) .....2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고시 제2018-134호) ....3

### 공 고(4)

- 수용재결 신청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704호) .....13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공고(공고 제2018-707호) .....14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711호) .....15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공고 제2018-712호) .....16

###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10호) .....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13호) .....32

공									
람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10조제1항),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점용 목적 : 가설건축물 설치(컨테이너)
- 허가 기간 : 2018. 9. 12. ~ 2020. 8. 31.

허가번호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지적(m <sup>2</sup> )	허가면적	
					용도	점유면적(m <sup>2</sup> )
2018-03 (18.9.12.)	(주)디케이에이 코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173-2	하천	337	가설건축물 설치	71m <sup>2</sup>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비래동 432-1	비래골길 47-6	2018. 9. 14	건물신축	비래골 자연마을명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2018. 9.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18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 ○ 회계별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	
총 계	386,640,906	356,871,000	29,769,906	8.34	
일 반 회 계	376,390,000	347,500,000	28,890,000	8.31	
기 타 특 별 회 계	10,250,906	9,371,000	879,906	9.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00	0	4,000	순증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680,403	539,000	141,403	26.23	
수 질 개 선	1,495,429	916,000	579,429	63.26	
지 하 수 관 리	1,054,437	1,033,000	21,437	2.08	
주 차 장	7,016,637	6,883,000	133,637	1.94	

# 일 반 회 계

##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76,390,000	100.00 %	347,500,000	100.00 %	28,890,000	8.31%
100 지방세수입	40,800,000	10.84 %	40,800,000	11.74 %	0	0.00%
110 지방세	40,800,000	10.84 %	40,800,000	11.74 %	0	0.00%
111 보통세	40,530,000	10.77 %	40,530,000	11.66 %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270,000	0.07 %	270,000	0.08 %	0	0.00%
200 세외수입	16,289,766	4.33 %	15,007,160	4.32 %	1,282,606	8.55%
210 경상적세외수입	11,079,322	2.94 %	11,048,559	3.18 %	30,763	0.28%
211 재산임대수입	100,270	0.03 %	100,270	0.03 %	0	0.00%
212 사용료수입	1,105,982	0.29 %	1,117,664	0.32 %	△11,682	△1.05%
213 수수료수입	4,524,488	1.20 %	4,524,488	1.30 %	0	0.00%
214 사업수입	175,628	0.05 %	175,628	0.05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4,056,579	1.08 %	4,056,579	1.17 %	0	0.00%
216 이자수입	1,116,375	0.30 %	1,073,930	0.31 %	42,445	3.95%
220 임시적세외수입	5,210,444	1.38 %	3,958,601	1.14 %	1,251,843	31.62%
221 재산매각수입	70,000	0.02 %	70,000	0.02 %	0	0.00%
222 부담금	285,474	0.08 %	285,474	0.08 %	0	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527,089	0.14 %	506,089	0.15 %	21,000	4.15%
224 기타수입	3,827,881	1.02 %	2,597,038	0.75 %	1,230,843	47.39%
225 지난년도수입	500,000	0.13 %	500,000	0.14 %	0	0.00%
300 지방교부세	7,576,000	2.01 %	6,000,000	1.73 %	1,576,000	26.27%
310 지방교부세	7,576,000	2.01 %	6,000,000	1.73 %	1,576,000	26.27%
311 지방교부세	7,576,000	2.01 %	6,000,000	1.73 %	1,576,000	26.27%
400 조정교부금등	52,410,592	13.92 %	49,828,725	14.34 %	2,581,867	5.18%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2,410,592	13.92 %	49,828,725	14.34 %	2,581,867	5.18%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2,410,592	13.92 %	49,828,725	14.34 %	2,581,867	5.18%
500 보조금	231,881,612	61.61 %	216,164,115	62.21 %	15,717,497	7.27%
510 국고보조금등	133,544,097	35.48 %	129,500,657	37.27 %	4,043,440	3.12%
511 국고보조금등	133,544,097	35.48 %	129,500,657	37.27 %	4,043,440	3.12%
520 시·도비보조금등	98,337,515	26.13 %	86,663,458	24.94 %	11,674,057	13.47%
521 시·도비보조금등	98,337,515	26.13 %	86,663,458	24.94 %	11,674,057	13.4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432,030	7.29 %	19,700,000	5.67 %	7,732,030	39.25%
710 보전수입등	27,426,030	7.29 %	19,700,000	5.67 %	7,726,030	39.22%
711 잉여금	22,798,248	6.06 %	19,700,000	5.67 %	3,098,248	15.73%
712 전년도이월금	4,627,782	1.23 %	0	0.00 %	4,627,782	순증
720 내부거래	6,000	0.00 %	0	0.00 %	6,000	순증
721 전입금	6,000	0.00 %	0	0.00 %	6,000	순증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76,390,000	100.00 %	347,500,000	100.00 %	28,890,000	8.31 %
010 일반공공행정	14,667,074	3.90 %	13,469,478	3.88 %	1,197,596	8.89 %
011 입법및선거관리	2,146,917	0.57 %	2,146,117	0.62 %	800	0.04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871,312	0.23 %	851,312	0.24 %	20,000	2.35 %
014 재정·금융	1,968	0.00 %	0	0.00 %	1,968	순증
016 일반행정	11,646,877	3.09 %	10,472,049	3.01 %	1,174,828	11.22 %
020 공공질서및안전	1,160,599	0.31 %	969,114	0.28 %	191,485	19.76 %
025 재난방재·민방위	1,160,599	0.31 %	969,114	0.28 %	191,485	19.76 %
050 교육	6,695,820	1.78 %	6,386,839	1.84 %	308,981	4.84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4,905,816	1.30 %	4,905,816	1.41 %	0	0.00 %
053 평생·직업교육	1,790,004	0.48 %	1,481,023	0.43 %	308,981	20.86 %
060 문화및관광	6,757,518	1.80 %	4,379,641	1.26 %	2,377,877	54.29 %
061 문화예술	2,317,574	0.62 %	1,944,839	0.56 %	372,735	19.17 %
062 관광	279,117	0.07 %	23,117	0.01 %	256,000	1107.41 %
063 체육	3,774,948	1.00 %	2,045,806	0.59 %	1,729,142	84.52 %
064 문화재	385,879	0.10 %	365,879	0.11 %	20,000	5.47 %
070 환경보호	11,481,411	3.05 %	11,409,014	3.28 %	72,397	0.63 %
071 상하수도·수질	351,923	0.09 %	341,350	0.10 %	10,573	3.10 %
072 폐기물	10,764,444	2.86 %	10,713,220	3.08 %	51,224	0.48 %
073 대기	112,256	0.03 %	112,256	0.03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252,788	0.07 %	242,188	0.07 %	10,600	4.38 %
080 사회복지	191,828,370	50.97 %	187,801,412	54.04 %	4,026,958	2.14 %
081 기초생활보장	34,358,302	9.13 %	34,049,542	9.80 %	308,760	0.91 %
082 취약계층지원	41,499,188	11.03 %	42,365,979	12.19 %	△866,791	△2.05 %
084 보육·가족및여성	50,127,844	13.32 %	45,242,800	13.02 %	4,885,044	10.80 %
085 노인·청소년	56,305,130	14.96 %	57,133,490	16.44 %	△828,360	△1.45 %
086 노동	1,380,453	0.37 %	1,194,373	0.34 %	186,080	15.58 %
087 보훈	825,492	0.22 %	825,492	0.24 %	0	0.00 %
089 사회복지일반	7,331,961	1.95 %	6,989,736	2.01 %	342,225	4.90 %
090 보건	7,601,096	2.02 %	7,302,532	2.10 %	298,564	4.09 %
091 보건의료	7,086,737	1.88 %	6,798,543	1.96 %	288,194	4.24 %
093 식품의약품안전	514,359	0.14 %	503,989	0.15 %	10,370	2.06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100 농림해양수산	6,843,747	1.82 %	6,138,511	1.77 %	705,236	11.49 %
101 농업·농촌	1,618,543	0.43 %	1,175,319	0.34 %	443,224	37.71 %
102 임업·산촌	5,225,204	1.39 %	4,963,192	1.43 %	262,012	5.28 %
110 산업·중소기업	844,739	0.22 %	518,401	0.15 %	326,338	62.95 %
113 무역및투자유치	5,738	0.00 %	5,738	0.00 %	0	0.00 %
114 산업진흥·고도화	512,183	0.14 %	192,958	0.06 %	319,225	165.44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326,818	0.09 %	319,705	0.09 %	7,113	2.22 %
120 수송및교통	34,146,528	9.07 %	25,686,512	7.39 %	8,460,016	32.94 %
121 도로	8,743,830	2.32 %	6,059,644	1.74 %	2,684,186	44.30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5,402,698	6.75 %	19,626,868	5.65 %	5,775,830	29.43 %
140 국토및지역개발	28,631,772	7.61 %	18,383,714	5.29 %	10,248,058	55.75 %
141 수자원	4,688,642	1.25 %	4,320,347	1.24 %	368,295	8.52 %
142 지역및도시	23,943,130	6.36 %	14,063,367	4.05 %	9,879,763	70.25 %
160 예비비	4,140,014	1.10 %	4,114,234	1.18 %	25,780	0.63 %
161 예비비	4,140,014	1.10 %	4,114,234	1.18 %	25,780	0.63 %
900 기타	61,591,312	16.36 %	60,940,598	17.54 %	650,714	1.07 %
901 기타	61,591,312	16.36 %	60,940,598	17.54 %	650,714	1.07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000	100.00 %	0	0.00 %	4,000	순증
500 보조금	4,000	100.00 %	0	0.00 %	4,000	순증
510 국고보조금등	4,000	100.00 %	0	0.00 %	4,000	순증
511 국고보조금등	4,000	100.00 %	0	0.00 %	4,000	순증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000	100.00 %	0	0.00 %	4,000	순증
110 산업·중소기업	4,000	100.00 %	0	0.00 %	4,000	순증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4,000	100.00 %	0	0.00 %	4,000	순증

# 의료급여운영특별회계

##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80,403	100.00 %	539,000	100.00 %	141,403	26.23%
200 세외수입	23,823	3.50 %	2,117	0.39 %	21,706	1025.32%
210 경상적세외수입	1,756	0.26 %	2,117	0.39 %	△361	△17.05%
216 이자수입	1,756	0.26 %	2,117	0.39 %	△361	△17.05%
220 임시적세외수입	22,067	3.24 %	0	0.00 %	22,067	순증
224 기타수입	22,067	3.24 %	0	0.00 %	22,067	순증
500 보조금	571,587	84.01 %	536,883	99.61 %	34,704	6.46%
510 국고보조금등	457,270	67.21 %	429,507	79.69 %	27,763	6.46%
511 국고보조금등	457,270	67.21 %	429,507	79.69 %	27,763	6.46%
520 시·도비보조금등	114,317	16.80 %	107,376	19.92 %	6,941	6.46%
521 시·도비보조금등	114,317	16.80 %	107,376	19.92 %	6,941	6.4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993	12.49 %	0	0.00 %	84,993	순증
710 보전수입등	84,993	12.49 %	0	0.00 %	84,993	순증
711 잉여금	40,503	5.95 %	0	0.00 %	40,503	순증
712 전년도이월금	44,490	6.54 %	0	0.00 %	44,490	순증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80,403	100.00 %	539,000	100.00 %	141,403	26.23 %
080 사회복지	680,403	100.00 %	539,000	100.00 %	141,403	26.23 %
081 기초생활보장	583,880	85.81 %	536,883	99.61 %	46,997	8.75 %
082 취약계층지원	96,523	14.19 %	2,117	0.39 %	94,406	4459.42 %

# 수질개선특별회계

##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95,429	100.00 %	916,000	100.00 %	579,429	63.26%
200 세외수입	11,297	0.76 %	11,297	1.23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1,297	0.76 %	11,297	1.23 %	0	0.00%
216 이자수입	11,297	0.76 %	11,297	1.23 %	0	0.00%
500 보조금	1,404,703	93.93 %	904,703	98.77 %	500,000	55.27%
510 국고보조금등	1,404,703	93.93 %	904,703	98.77 %	500,000	55.27%
511 국고보조금등	1,404,703	93.93 %	904,703	98.77 %	500,000	55.2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429	5.31 %	0	0.00 %	79,429	순증
710 보전수입등	79,429	5.31 %	0	0.00 %	79,429	순증
711 잉여금	32,786	2.19 %	0	0.00 %	32,786	순증
712 전년도이월금	46,643	3.12 %	0	0.00 %	46,643	순증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95,429	100.00 %	916,000	100.00 %	579,429	63.26 %
140 국토및지역개발	1,380,325	92.30 %	800,896	87.43 %	579,429	72.35 %
141 수자원	1,333,682	89.18 %	800,896	87.43 %	532,786	66.52 %
142 지역및도시	46,643	3.12 %	0	0.00 %	46,643	순증
900 기타	115,104	7.70 %	115,104	12.57 %	0	0.00 %
901 기타	115,104	7.70 %	115,104	12.57 %	0	0.00 %

# 지 하 수 관 리 특 별 회 계

##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54,437	100.00 %	1,033,000	100.00 %	21,437	2.08%
200 세외수입	118,000	11.19 %	118,000	11.42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6,000	1.52 %	16,000	1.55 %	0	0.00%
216 이자수입	16,000	1.52 %	16,000	1.55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2,000	9.67 %	102,000	9.87 %	0	0.00%
222 부담금	100,000	9.48 %	100,000	9.68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2,000	0.19 %	2,000	0.19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6,437	88.81 %	915,000	88.58 %	21,437	2.34%
710 보전수입등	936,437	88.81 %	915,000	88.58 %	21,437	2.34%
711 잉여금	936,437	88.81 %	915,000	88.58 %	21,437	2.34%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54,437	100.00 %	1,033,000	100.00 %	21,437	2.08 %
070 환경보호	1,018,933	96.63 %	1,001,384	96.94 %	17,549	1.75 %
071 상하수도·수질	1,018,933	96.63 %	1,001,384	96.94 %	17,549	1.75 %
900 기타	35,504	3.37 %	31,616	3.06 %	3,888	12.30 %
901 기타	35,504	3.37 %	31,616	3.06 %	3,888	12.30 %

# 주차장 특별회계

##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016,637	100.00 %	6,883,000	100.00 %	133,637	1.94%
200 세외수입	1,443,280	20.57 %	1,443,280	20.97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30,500	1.86 %	130,500	1.90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24,500	1.77 %	124,500	1.81 %	0	0.00%
216 이자수입	6,000	0.09 %	6,000	0.09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12,780	18.71 %	1,312,780	19.07 %	0	0.00%
222 부담금	153,280	2.18 %	153,280	2.23 %	0	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750,000	10.69 %	750,000	10.90 %	0	0.00%
224 기타수입	59,500	0.85 %	59,500	0.86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350,000	4.99 %	350,000	5.08 %	0	0.00%
500 보조금	4,126,100	58.80 %	4,085,000	59.35 %	41,100	1.01%
510 국고보조금등	3,000,000	42.76 %	3,000,000	43.59 %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3,000,000	42.76 %	3,000,000	43.59 %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126,100	16.05 %	1,085,000	15.76 %	41,100	3.79%
521 시·도비보조금등	1,126,100	16.05 %	1,085,000	15.76 %	41,100	3.7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47,257	20.63 %	1,354,720	19.68 %	92,537	6.83%
710 보전수입등	447,257	6.37 %	354,720	5.15 %	92,537	26.09%
711 잉여금	419,591	5.98 %	354,720	5.15 %	64,871	18.29%
712 전년도이월금	27,666	0.39 %	0	0.00 %	27,666	순증
720 내부거래	1,000,000	14.25 %	1,000,000	14.53 %	0	0.00%
721 전입금	1,000,000	14.25 %	1,000,000	14.53 %	0	0.00%

## ○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016,637	100.00 %	6,883,000	100.00 %	133,637	1.94 %
120 수송및교통	6,817,648	97.16 %	6,684,011	97.11 %	133,637	2.00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6,817,648	97.16 %	6,684,011	97.11 %	133,637	2.00 %
900 기타	198,989	2.84 %	198,989	2.89 %	0	0.00 %
901 기타	198,989	2.84 %	198,989	2.89 %	0	0.00 %

## 수용재결 신청서 공시송달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대전상서지구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대덕구청 도시재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대전상서 공공(행복)주택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146-11번지 일원, 12,007m<sup>2</sup>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전화: 042-470-0009 )
4. 시행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공 고 기 간 : 2018. 9. 14. ~ 2018. 10. 4.(20일간)
6. 공 고 대 상 :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18수용0359, 18수용0901)  
※ 세부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및 개별 통지함.
7. 열 략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별관4층(☎042-608-5102)
8. 기 타 사 항 : 공고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서를 우리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점용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9호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취소 사유 :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위치 변경으로 점용목적 상실
2. 취소(철회) 신청일 : 2018. 9. 5.
3. 점용·사용 허가 취소 내용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덕구청장(안전총괄과장)		
	대표자 (성 명)	박정현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소하천명		덕암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00-4		
	면적	1.2㎡		
	기간	2018.6. ~ 영구		
	허가일	2018. 4. 17.		
	목적 및 사유	재난취약지역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에 따른 공작물(폴대)설치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납부의 고지] 및 같은법 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정·납부고지 및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에 따른 공고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8. 9. 14 ~ 2018. 9. 27
4. 공고내용 :

대상자현황		대상토지 및	부과금액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안*인	대전시 유성구 진잠옛로 21*	미호동 274-3 단독주택 건축	<b>부과금액 : 26,052,420원</b> 국비:12,646,810원+379,400(가산금) 지방비:12,646,810원+379,400(가산금)	

※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박희자(☎608-5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 8. 31. ~ 9. 7.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공고기간 : 2018. 9. 14. ~ 9. 21.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 수	비고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노동조합	이재복	2018. 8. 29.	87명	

참고사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위생과 청소담당 (☎ 042-608-6832)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재직기간 확대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나.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건 휴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시행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재직기간을 확대함(안 제23조).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와 직장 격리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전화:042-608-6502, FAX:042-608-38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최은호(☎ 042-608-6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 1. 개정이유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재직기간 확대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나.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건 휴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시행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재직기간을 확대함(안 제23조).
-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와 직장 격리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8. 09. 14. ~ 2018. 10. 04. / 20일 이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가.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라. 30년 이상: 20일

8.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9.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0.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호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lt;삭 제&gt;</p>																		
<p>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42 824 751 1249">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 이상 6월 미만</td> <td>3일</td> </tr> <tr> <td>6월 이상 1년 미만</td> <td>6일</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9일</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2일</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4일</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7일</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20일</td> </tr> <tr> <td>6년 이상</td> <td>21일</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 정직기간 ·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p>&lt;삭 제&gt;</p>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현행	개정안
<p>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p> <p>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p> <p>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p> <p>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p> <p>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p> <p>① (생략)</p> <p>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p> <p>① (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u>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u></p>	<p>&lt;삭제&gt;</p>
<p>⑥ (생략)</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생략) 1. ~ 2.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p>
<p>3.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u></p>	<p>&lt;삭제&gt;</p>
<p>4. <u>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lt;삭제&gt;</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6. <u>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르고, 휴가일수는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6. <u>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가.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라. 30년 이상 : 20일</p>

현행	개정안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9.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0.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 무 과	
담 당 자	최 은 호
연 락 처	(042) 608 - 6502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 이유

민선 7기 조직개편과 관련, 우리구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신규구입을 통해 기관별 기준정수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량 별도정수 배정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나. 차량의 교체에 있어 전용 승용차량으로만 되어 있던 것에 동일기준을 적용받는 의전용 전용차량을 추가 삽입하고, 차량교체 시 확인방법을 강화함(안 제12조).

다. 공용차량 기준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형 중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소

형, 경형, 다목적 승용차를 통합하고 배기량으로 차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차형의 기준정수 관리를 위해 승용차량의 차형을 추가함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3).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8. 09. 14. ~ 2018. 10. 04 / 20일 이상

####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0. 0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 042-608-6541, FAX : 042- 608-3821, e-mail : baks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전용 승용차는”을 “전용·의전용 승용차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를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차형란 중 “다목적승용차”를 “다목적·그밖에 승용차”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의 승용차량의 차형별란과 분류번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 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경형, 다목적, 그밖에 승용차
구 본청	20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1대, 업무용 1대)	17대
구 의회	1대	1대 (의전용)		
보건소	3대		1대	2대
복합문화센터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12대			12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가. 구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	· 구 본청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 구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 구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하수도사업용	· 구 본청 :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 생활민원처리 사업용으로 소형 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단위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	<p>- 구 본청 등 :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p> <p>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 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p> <p>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p> <p>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단위부서는 신규 청소 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p>
그 밖의 용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 차량 정수번호 부여(제8조 관련)

###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형승용차</li><li>· 중형승용차</li><li>· 소형승용차</li><li>· 경형승용차</li><li>· 다목적승용차</li><li>· 그 밖에 승용차</li></ul>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가 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정수배정) ①·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6조(정수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p>
<p>제12조(차량의 교체) ① (생략)</p> <p>1. (생략)</p> <p>2. <u>전용 승용차는</u>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p> <p>3. (생략)</p> <p>② (생략)</p> <p>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u>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u></p>	<p>제12조(차량의 교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용·의전용승용차는</u>-----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p> <p>-----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자동차의 종류)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 용 자 동 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정수배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 무 과	
담 당 자	박 상 윤
연 락 처	(042) 608 - 6541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